외국 법제 동향

[특집] 주요 국가의 선박안전 관리법제

최근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재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이번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선박분야의 안전관리법제에 관하여 주요 국가의 법제를 특집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영국의 선박안전 관리법제

I. 서 설

최근 대형선박사고를 경험한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현실에 맞는 제도 운용이라는 목표하에 그 동안의 법제도 운용의 실효성을 되짚어 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고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선박안전법제의 점검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 되었다.

이제 우리 법제에 영향을 미친 선진국의 선 박안전 관리법제, 그 중에서도 전통적 해상국 가로서 국제 해상법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 영국의 법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법제 정비 시에 좋은 참고가 될 것이며 시의 적절하 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바탕 아래 이하에서는 먼저 영국 선박안전 관리법제의 기본적인 체계 를 살펴 보고, 이어서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인 법규를 개괄하기로 한다.

II. 영국 선박안전 관리법제 개요

영국 선박안전 관리법제의 법원으로는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조약 · 협정 또는 결의, 영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EU의 법규, 그리고 영국 국내법규를 들 수 있다. IMO는 선박

안전 및 기술협력 등 국제해사 안전법규의 근 간을 마련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며, EU 법 규 또한 각 회원국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므로 영국 내에서 즉시(EU regulations의 경우) 또는 EU 법규 내용을 반영한 영국 국내법을 통해 (EU directives 및 decisions의 경우) 영국 내에 서 효력을 가진다.

영국 국내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Acts of Parliament)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Statutory Instruments)으로 구성 되며, Marine notices와 codes of practice가 명 령을 보완하는 경우가 많다. Marine notices와 codes of practice는 명령을 기술적으로 상세화 하는 것으로서, 명령이 이들에게 법규로서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적 구속력 을 갖는다. Marine notices의 내용은 안전, 오염 방지 등 중요 해사정보이며, codes of practice 는 어떻게 법규를 준수할 것인지에 관한 지침 이다. Maritime notices에는 당사자에 대해 법 적 구속력을 갖는 지침인 Merchant Shipping Notices(MSNs), 법 해석 지침이나 모범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권고 및 안전을 위한 지도를 담고 있는 Marine Guidance Notes(MGNs), 적 용 대상이나 적용기간에 제한이 있는 정보로서 한시적인 효력을 가지는 Marine Information Notes(MINs)의 세 유형이 있으며 이중 구속력

이 있는 MSNs가 중요하다.

한편, 영국에서는 Department for Transport (DfT)의 산하기관인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MCA)가 선박의 건조, 운용 및 항행, 선박 등록, 각종 면허 발급 등 해사 안전정책을 집행하고, Maritime notices를 발행하고 있으며, 법규 및 지침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중요한 문제에 관한 여론 수렴절차를 수행하고 있다.

III. 선박안전 관리법규

1. 법률

Merchant Shipping Act 1995는 영국의 해사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동법의 서문이 "본 법은 Merchant Shipping Act 1894 to 1994 및 merchant shipping 관련 법규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라 함으로써 잘 알 수 있다. 동법이 다루고 있는 분야도 선적, 선박의 등록 등선박에 관한 사항과 선원, 선박안전, 어선, 오염방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 등대, 선박구조및 난파사고, 공무원의 선박검사권한, 해양사고의 조사, 해양사고로 인한 형사소추절차 등광범위하다. 이하에서 소개되는 법령의 대부분은 Merchant Shipping Act 1995의 위임규정에의거하여 제정된 것들이다. 동법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표1〉 선박안전 관리법규

서문

Part I British ships

· 제1조 ~ 제7조

Part II Registration

- · 총칙(제8조 ~ 제16조)
- · 국적취득조건부 선박용선(제17조)
- · 부칙(제18조 ~ 제23조)

Part III Masters and seamen

- · 적용(제24조)
- · 선원의 고용 및 해고(제25조 ~ 제29조)
- · 급료 등(제30조 ~ 제41조)
- · 안전, 보건, 복지(제42조 ~ 제45조)
- · 선원의 배치, 자격, 훈련, 복장(제46조 ~ 제57조)
- · 선원의 범죄 등(제58조 ~ 제59조)
- ・복무지침 위반(제60조)
- · 결격사유 및 심사(제61조 ~ 제69조)
- · 선원범죄에 대한 책임(제70조 ~ 제72조)
- · 선원의 구조, 송환 및 구조비용(제73조 ~ 제76조)
- · 선원서류(제77조 ~ 제81조)
- · 선원징발(제82조 ~ 제83조)
- · 해석조항(제84조)

Part IV Safety

- · 선내 안전 및 보건(제85조 ~ 제88조)
- · 특칙(제89조 ~ 제91조)
- ・해상조력의무(제92조 ~ 제93조)
- · 위험선박(제94조 ~ 제100조)
- · 임시격리구역(제100A조 ~ 제100B조)
- · 선박이동요구권(제100C조 ~ 제100G조)
- · 승선인원의 통제 및 송환(제101조 ~ 제108조)



- · Chapter I 선원
- · Chapter II 안전

Part VI Prevention of Pollution

- · Chapter I 총칙
- · Chapter IA 항만의 오물수거시설
- · Chapter II 유류오염
- · Chapter III 유류오염에 대한 책임
- · Chapter IV 국제유류오염배상기금
- · Chapter V 위험물 운반

Part VII Liability of Shipowners and others

Part VIII Lighthouses

Part IX Salvage and Wreck

- · Chapter I 해난구조
- · Chapter II 선박난파
- · Chapter III 부칙

Part X Enforcement Officers and Powers

Part XI Accident Investigations and Inquiries

Part XII Legal Proceedings

Part XIII Supplemental

동법에서 선박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Part IV 로서, 여기에는 잠수장비의 안전확보의무(제 88조), 선박충돌 시 또는 표류 항공기 발견 시 의 조력의무(제92조 ~ 제93조), 생명에 대한 심 각한 위험 없이 항해하기에 부적합한 위험선박 의 억류, 보상 및 책임(제94조 ~ 제100조), 사고 의 결과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임시격리구역 설정(제100A조 ~ 제100B 조), 안전확보 또는 오염감소 목적의 선박퇴거 요구권(제100C조 ~ 제100G조), 주취자 · 범죄 자 · 불법승선자 등에 대한 체포 등 선장의 승 선인원 통제 및 송환(제101조 ~ 제108조)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후 Merchant Shipping and Maritime Security Act 1997이 제정되었는데, 동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Merchant Shipping Act 1995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소방당국의 구난활동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제4조), 난파선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을 반영하며(제24조), 해적행위에 관하여 1982년 UN 해양법협약의 규정을 받아들여 영국 국내법으로 간주(제26조)하는 것등이다.

2. 명 령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이 제정한 명령(Statutory Instruments)도 법적 구속력을 갖는데,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일 반

Merchant Shipping(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ISM) Code) Regulations 2014 는 Merchant Shipping Act 1995의 위임을 받아 교통부장관이 제정하였으며 2014년 7월 18일부터 발효될 예정인데, 이 명령의 제정으로 기존의 Merchant Shipping(ISM Code) (Ro-Ro Passenger Ferries) Regulations 1997

과 Merchant Shipping(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ISM) Code) Regulations 1998은 폐지되었다. 동 명령의 주요내용으로는 선주 또는 선박운영사가 ISM Code가 요구하는 안전 관련 서류를 보유하고 선장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집행할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Part 2),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는 한편 행정관리에게 이러한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Part 4)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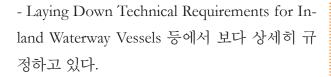
Merchant Shipping(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s 2002는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SOLAS)의 항행
안전부분을 영국의 국내법으로 집행하기 위하
여 제정된 명령으로서, SOLAS가 항행안전을
위해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조건들을 각
급 선박에 적용하는 한편(Regulation 5), 조건의
면제 또는 변경이 항행안전수준을 낮추지 않아
야 한다는 전제 하에 행정기관이 이러한 조건
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조건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Regulations 7
~ 8), 동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선
박을 억류할 수 있음(Regulation 11)을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Shipping(Safety of Navigation) Regulations 2002는 Merchant Shipping(Safety of Navigation)(Amendment) Regulations 2011에 의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명령은 IMO의 결정에 의해 SOLAS에 추가된 부분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고 항해하는 경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당국에게 동

명령 발효 후 5년마다 명령의 이행 및 효과에 관하여 평가하고 명령의 유지, 폐지 또는 개정 여부를 고려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Regulation 2).

영국내의 내수면을 항행하는 여객선에 관하여는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s) (Safety Code for UK Categorised Waters) Regulations 2010이 규정하고 있는데, 내수면 항행면허 발급을 위한 선박의 준공 시, 개장 후, 정기조사, 조사 없는 선박의 항행금지, 선박의 안전관리체계 보유의무(Regulations 4 ~ 11), 항행면허의 유효기간, 정지, 취소(Regulations 12~14), 선박유지 시, 사고 시, 잠재적 결함과 관련한 선주 및 선장 등의 선박건조기준 및 안전조건 준수의무와 시정조치의무(Regulations 17~18), 위법행위 및 선박억류(Regulations 21~23)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수면 항행에 관한 EU 법규를 집행하기 위하여 Merchant Shipping(Technical Requirements for Inland Waterway Vessels) Regulations 2010이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EU 역내내수면 항행면허 및 이에 상당하는 면허(회원국간 상호인정 통해)에 관한 조항(Regulations 6 ~ 11), 선박검사 및 시정조치(Regulation 12) 및 위반행위와 벌칙(Regulation 13)에 관하여규정하고 있다. 내수면 항행선박에 관해서는 MSN 1699 Amendment 1: the merchant s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8, MSN 1823 Safety Code for Passenger Ships Operating Solely in UK Categorised Waters 및 MSN 1824 EU Directive 2006/87/EC(as amended)



2) 안전에 관한 인적 요소

Merchant Shipping(Training and Certification)(Amendment) Regulations 2008은 관련 EU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정 이전의 EU 법규를 반영하고 있던 Merchant Shipping(Training and Certification) Regulations 1997이 이에 의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국의 행정기관은 European Economic Area의 다른 회원국이 발급한 선원면허를 인정해야 하고(Regulation 2(2)(a)), 행정기관에서 선원면허를 인정받지 못한 자의 재심청구권을 보장(Regulation 2(6)(b))하고 있다.

EEA의 회원국은아니지만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의 체약국이 발급한 선원면 허의 인정은 역시 Merchant Shipping(Training and Certification) Regulations 1997을 개정한 Merchant Shipping(Training and Certification and Minimum Standards of Safety Communications)(Amendment) Regulations 2006이 규율하고 있다.

내수면항행선박의 선원자격 및 훈련에 관 하여는 Merchant Shipping(Local Passenger Vessels)(Masters' Licences and Hours, Manning and Training) Regulations 1993에서 규정 하고 있었는데, 동 명령의 대부분은 Merchant Shipping(Inland Waterway and Limited Coastal Operations)(Boatmasters' Qualifications and Hours of Work) Regulations 2006으로 대체 되었고, 동 명령의 regulation 14(additional crew) 중 선원자격에 관한 부분은 Merchant Shipping(Local Passenger Vessels)(Crew) Regulations 2006으로 대체되었으며, 동 명령 regulation 14의 나머지 부분은 Merchant Shipping(Survey and Certification) Regulations 1995로 대체되었다.

Merchant Shipping(Minimum Standards of Safety Communications)(Amendment) Regulations 1999는 Merchant Shipping(Minimum Standards of Safety Communications) Regulations 1997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명령이다. 이 명령에서는 선박은 비상시에도 모든 선원들 간 안전(메시지와 지시사항의 신속하고 정확한 수신 및 이해)에 관한 효과적인 구두 통신을 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마련해야 하고, 선박과 연안 통제소간 적절한 통신수단을 확보해야 한 다. 여객선의 선사와 선장은 안전문제에 관하 여 선원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선박 내 통용언어를 설정하며, 긴급상황 시 승 객을 도울 자로 지정된 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 도록 하고 그 자가 비상상황 안내방송 등 승객 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도록 한 다. 유류 · 화학물질 · 액화가스 운반선의 선사 와 선장은 모든 선원이 평이한 선박내 통용언 어로 상호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 를 규정하고 있다(Regulation 5).

3) 안전에 관한 기술적 요소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 Construction: Ships of Classes I, II and II(A)) Regulations 1998은 여객선의 건조 시 충족해야 할 기준을 각 구조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2〉 여객선 건조 기준

Part II

· 강도, 구조 및 수밀구획

Part III

· 배의 선체 및 수밀 칸막이벽의 폐쇄

Part IV

· 밀폐된 선루 및 겹벽 갑판 위의 칸막이 벽 폐쇄

Part V

· 복원력 및 선체 마킹

Part VI

· 빌지 펌핑설비

Part VII

· 전기 장치 및 설치

Part VIII

· 보일러 및 기계

Part IX

ㆍ 잡칙 요건

Part X

· 특별한 범주에 속한 선박 또는 Ro-RO 화물공간의 잡칙요건

Part XI

· 벌금, 구금 및 무효한 복원력 정보

<표2>는 구조별로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을 기술하고 있다. 다른 클래스의 여객선에 관한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 Construction: S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8도 위의 명령과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MSN 1699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 Construction: S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8 등이 이를 상세화하고 있다.

화물선의 건조에 관하여는 Merchant Ship -ping(Cargo Ship Construction) Regulations 1997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은 위의 여객선에서와 같지만 여객선과 화물선의 구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여객선과는 다른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표3〉화물선의 건조 기준

Part II

• 수밀문, 수밀데크 등 모든 화물선에 적용되는 요건

Part III

· 길이가 100미터 이상인 화물선의 평형성

Part IV

· tanker선 이외의 화물선에 적용되는 이중 바닥

Part V

· dry cargo선의 피해 관리

Part VI

· tanker선의 구조

Part VII

· 보일러, 냉각수, 공조시스템 등 기계장비의 설치

Part VIII

• 전기장치의 설치

Part IX

• 잡칙

Part X

· Equivalents, 벌금, 구금

Merchant Shipping(Cargo Ship Construction)(Amendment) Regulations 1999는 SOLAS 의 관련 부분 개정을 반영하여 Merchant Shipping(Cargo Ship Construction) Regulations 1997을 개정하기 위해 제정된 명령으로 서, 신조 선박의 수밀능력 확보를 위한 추가요 건(Regulation 4), 선박 평형성 요건의 적용대 상을 기존의 길이 100미터 이상 선박에서 길 이 80미터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Regulations 6 ~ 8), 신조 tanker선의 주펌프실과 파이프터널 사이에 수밀문 설치를 추가로 요구(Regulation 8), 신조 tanker선에 기상악화 시 선원이 선수부 에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고 이를 기존 선박에 확대적용(Regulation 13)하는 내용을 담고 있 다. MSN 1671 Amendment 1: The Merchant Shipping(Cargo Ship Construction) Regulations 1997: Schedules, MSN 1671 Amendment 2: The Merchant Shipping(Cargo Ship Construction)(Amendment) Regulations 1999 등이 이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고속선박에 관한 Merchant Shipping(High-Speed Craft) Regulations 2004는 SOLAS의 관련부분의 개정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동 명령의 제정으로 Merchant Shipping(High-Speed Craft) Regulations 1996이 폐지되었다. 동 명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속여

객선이 운항허가를 받기 위한 최대 탑승인원 (Regulation 8),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 이거나 비합리적이고, 기준과 동등한 안전수준이 제공되는 경우 행정기관의 특정 선박에 대한 기준의 적용 면제(Regulation 4), 기준 위반행위의 위법성과 처벌(Regulation 9), 선박의 억류(Regulation 10) 등이 있다. 고속선박의 건조기준은 MGN 327 High-Speed Craft Dynamic Stability in Following & Quartering Seas - Design Guidance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Merchant Shipping(Survey and Certification) (Amendment) Regulations 2000은 Merchant Shipping(Survey and Certification) Regulations 1995를 개정한 명령으로서, 여객선의 각종 중 명서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고 매년 검사를 통해 이를 갱신토록 하였고, 화물선의 각종 중 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고 화물선에 대해서는 각종 증명서를 대체하는 화물선 안전증 명서를 도입하였다.

Merchant Shipping(Mandatory Surveys for Ro-Ro Ferry and High Speed Passenger Craft) Regulations 2001은 관련 EU 법규의 집행을 위해 제정된 명령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Ro-Ro선과 고속여객선 서비스 안전규정

Regulation 4

· MCA에게 Ro-Ro선과 고속여객선의 운항면허 확인, 선체의 건조 및 지지, 기계, 전장, 조종장치의 설치 등에 관 한 법규 준수여부 확인, 항해기록장치 설치여부 확인, 평형성 기준 준수여부 확인

Regulation 5

· MCA의 선박회사와 관련한 확인의무

Regulation 6, Regulation 7

· 선박건조검사 및 그 면제사유(기 운항 중,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체선박이 긴급 투입되어야 하는 경우, 육안 또는 서류 확인 결과 안전항행을 위한 요건 위반의 의심이 없는 경우)

Regulation 8

· 정기검사 및 임시검사

Regulation 9, Regulation 13

· 요건 미충족 시 MCA의 운항금지 통지 및 이와 관 런한 MCA의 행정절차적 의무

Regulation 14

· IMO 기준에 의한 MCA의 연안항행안내체계 운영의무

Ro-Ro선의 평형성에 관하여는 Merchant Shipping(Ro-Ro Passenger Ship Survivability) Regulations 1997에서 규율하고 있었는데, 동 명령은 Merchant Shipping(Ro-Ro Passenger Ships)(Stability) Regulations 2004로 대체되었 다. Merchant Shipping(Ro-Ro Passenger Ships) (Stability) Regulations 2004는 SOLAS에서 요 구하고 있는 기준을 채택한 EU 법규를 반영 하고 있으며(Regulation 4), Stockholm Agreement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준도 반영하고 있 다(Regulation 5). 단, 영국 행정기관은,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 적이고, 영국 행정기관 및 Stockholm Agreement 체약국이면서 당해선박 선적국과 항행의 출발지 또는 목적지의 행정기관이 항행에 적 합한 안전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 건이나 한계 내에서 특정 선박에 대해 기준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다(Regulation 8). 동 명령의 기준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2년이 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Regulation 9), 선박이 억류될 수 있다(Regulation 10). MSN 1790 Agreement Concerning Specific Stability Requirements for Ro-Ro Passenger Ships Undertaking Regular Scheduled International or Domestic Voyages between European Ports가 Merchant Shipping(Ro-Ro Passenger Ships)(Stability) Regulations 2004를 상세화하고 있다.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s on Domestic Voyages) Regulations 2000은 관련 EU 법규의 집행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 으로는, 국내항해여객선의 분류(Regulation 3), 적용범위(영국 선적의 신조 국내항해여객 선 또는 영국 선적이 아닌 신조 국내항해여 객선, 영국 선적의 기존 국내항해여객선으로 서 길이 24m 이상, 영국 선적이 아닌 기존 국 내항해여객선으로서 길이 24m 이상)(Regulation 4), 기존 명령의 개정(Regulation 5) 등이 있다.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s on Domestic Voyages)(Amendment) Regulations 2004는 EU 법규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s on Domestic Voyages) Regulations 2000을 개정하여 Ro-Ro 여객선에 구명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 며,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s on Domestic Voyages)(Amendment)(No. 2) Regulations 2004는 새로 건조되는 연안여객선에도 Stockholm Agreement 및 EU 법규가 요구하는

Ro-Ro선에 대한 평형성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Merchant Shipping(Life-Saving Appliances) (Amendment) Regulations 2001은 Merchant Shipping(Life-Saving Appliances for Passenger S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9를 개정한 명령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기 준을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 이고, 영국 행정기관이 면제 허가의 근거규정 이 제공하는 안전수준과 같은 수준의 안전수 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건이나 한계 내에서 특정 선박에 대해 기준의 적용을 면제 할 수 있음(Regulation 3), 통신장비 및 비상경 보장치의 설치(Regulations 4 ~ 5) 등이 있다. 한편, Merchant Shipping(Life-Saving Appliances For Ships Other Than 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9는 그 개정명령 of Merchant Shipping(Life-Saving Appliances For Ships Other Than Ships of Classes III to VI(A))(Amendment) Regulations 2004를 통해 Ro-Ro여객선에도 구명정 탑재를 의무화하였 다. life-saving appliances에 관한 상세한 기술적 요구사항 및 제원은 MSN 1676 The merchant shipping life-saving appliances regulations 1999 등에서 규율하고 있다.

선박의 소화방재 업무에 관하여는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Large Ships) Regulations 1998과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Small Ships) Regulations 1998에서 규정하고 있 으며 이는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Regulations 2003과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Regulations(Amendment) Regulations 2003에 의해 개정되었다.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Regulations 2003은 선박에게 SOLAS가 요구하는 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Regulation 5), 이러한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 적이고, 영국 행정기관이 면제 허가의 근거규 정이 제공하는 안전수준과 최소한 같은 수준 의 안전수준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한 조건이 나 한계 내에서 특정 선박에 대해 기준의 적용 을 면제할 수 있다(Regulation 6). 동 명령의 기 준을 위반하는 것은 위법행위로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Regulation 8), 선박이 억류될 수 있 다(Regulation 9).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Regulations(Amendment) Regulations 2003은 SOLAS의 해당분야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의 명령을 개정한 것으로서 선박규모별 소 화시설, 화재감지장치, 비상용 호흡마스크, 가 스누출 감시장치, 주방조리장비에 소화시설 설 치, 소방계획 및 소방태세 유지, 소방훈련 매뉴 얼 및 소방작업 안내책자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MSN 1670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Regulations 1998: Exemptions 등이 이 를 상세히 규율하고 있다.

Merchant Shipping(Marine Equipment) Regulations 1999는 관련 EU 법규를 집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신조 선박의 관련 국제기준 준수의무(Regulation 6), EU 법규 부합여부 평가절차(Regulations 11 ~ 18), 기준 충족 시 부여하는 마크의 위조, 변조, 훼

손을 형사범죄로 규정(Regulation 2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장비의 설치를 선사와 선장의 형사범죄로 규정(Regulation 21)하고 있다. 장비가 EU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승인에 관한 MSN 1734 Type Approval of Marine Equipment(EC Notified Bodies)가 동 명령을 상세화하였다. 이후 동 명령은 관련 EU 법규를 반영한 Merchant Shipping(Marine Equipment) (Amendment) Regulations 2009에 의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MSN 1734도 수차 개정되었으며 현재는 MSN 1734 Amendment 7: Approval of Marine Equipment(EC Notified Bodies)가 적용되고 있다.

Merchant Shipping(Vessel Traffic Monitor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Amendment) Regulations 2011은 관련 EU 법규를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이 명령에 의해 Merchant Shipping(Vessel Traffic Monitoring and Reporting Requirements) Regulations 2004 및 Merchant Shipping(Dangerous Goods and Marine Pollutants) Regulations 1997 일부가 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선박의 자동식별장치 설치의무, 해상사고 보고의무, 의무위반 시의 벌칙(Regulation 2 and Schedule 1)이 있다.

IV. 결 어

지금까지 영국의 선박안전 관리법제에 대해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 보면 영 국법제는 국제조약, EU 법규, 영국 국내법을 그 법원으로 하고 있으며, 의회가 제정한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명령과 명령을 기술적으로 보완하지만, 경우에 따라 명령의 위임조항에의해 역시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Marine Notices가 영국법제를 형성하고 있다.

영국의 선박안전 관리법제는 그 법원이나 법 형식의 다양성만큼이나 많은 법규가 산재되어 있고 또한 그 법규가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이점은 국제적 기준 에 맞춰 국내법제를 유지한다는 장점을 가지지 만, 해운선박업계의 실무에서 항상 이를 신속 히 적용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의구심을 버 릴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이점이 우리에게 시 사하는 바는, 법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선진 적인 법제를 유지하면서도 이를 업계의 실무에 서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함과 동시에 관계기관과 업계 모두가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꼭 준수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점일 것이다.

김 봉 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MGN 327 High-Speed Craft Dynamic Stability in Following & Quartering Seas Design Guidance.
- MSN 1670 Merchant Shipping(Fire Protection) Regulations 1998-Exemptions.
- MSN 1671 Amendment 1- The Merchant Shipping(Cargo Ship Construction) Regulations 1997- Schedules.
- MSN 1671 Amendment 2- The Merchant Shipping(Cargo Ship Construction)(Amendment) Regulations 1999.
- MSN 1676 The merchant shipping life-saving appliances regulations 1999.
- MSN 1699 Amendment 1- the merchant s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8.
- MSN 1699 Merchant Shipping(Passenger Ship Construction-Ships of Classes III to VI(A)) Regulations 1998.

- MSN 1734 Amendment 7- Approval of Marine Equipment (EC Notified Bodies).
- MSN 1734 Type Approval of Marine Equipment(EC Notified Bodies).
- MSN 1790 Agreement Concerning Specific Stability Requirements for Ro-Ro Passenger Ships Undertaking Regular Scheduled International or Domestic Voyages between European Ports.
- MSN 1823 Safety Code for Passenger Ships Operating Solely in UK Categorised Waters.
- MSN 1824 EU Directive 2006/87/EC(as amended) Laying Down Technical Requirements for Inland Waterway Vessels.
- 영국법령 웹사이트: http://www.legislation.gov.uk/.
- Merchant Shipping Notices 웹사이트: https://www.gov.uk/ships-cargoes/m-notices.